

있고 또 萬一 原審認定事實이 지나친 防衛行爲라 할지라도 二十一條 三項을 適用하면 當然히 無罪가 되
는 것이다. 따라서 判決理由에 前述한 바와 같은 根本問題에 言及하여 주었으면 좋겠다.

金 箕 斗
〈筆者——本大學副教授〉

(三) 法律 第二百二十號에 對한 憲法委員會의 決定 批評

〔事實〕 原告는 檀紀 四二七八年 七月一日 當時의 所有者인 日本人 藤井伊助로부터 同人所有 不動產을 買受하였으나
그 所有權移轉登記를 完了치 못한채 八、一五解放을 맞이하여 美軍政이 實施되자(一) 本件 不動產은 軍政法令에 依하여 敵
產으로 認定되었음으로(二)(三) 原告는 美軍政當局에 訴請하여 檀紀 四二八一年 九月九日에 所有權의 確認을 받고 그 登
記節次까지 完了한바 있음에도(四) 不拘하고 被告(國)는 檀紀 四二八三年 四月八日에 法律 第二百二十號「簡易節次에 依한
歸屬解除決定의 確認에 關한 法律」(以下 法律 第二百二十號라 略稱한다)를 制定公布하고 原告의 右 不動產에 對한 所有
權을 否認함으로 原告는 被告를 相對로 所有權의 確認判決을 일기爲하여 本訴에 이르렀다.

1 戰勝國이 戰敗國의 領土全部 또는 領土一部를 占領할 때, 그 軍政을 實施함에 있어, 被占領國의 主權을 그대로認
定하면서 軍政을 實施하다가, 媾和條約에 따라 軍政의 終了됨과 同時 被占領國의 主權이 原狀대로 復歸될 때(이를 第
一形式의 軍政이라 假稱한다)와 被占領國의 主權을 公然剝奪하는 前提下에 軍政을 實施하다가, 軍政地域의 歸屬을
媾和條約에서 規定할 때(이를 第二形式의 軍政이라 假稱한다)가 있다. 第二形式의 軍政에 있어서는 當該地域의 實情
에 따라 그 軍政은 相當한 時口을 要하는 때도 있으며 當該地域을 占領國의 領土로 編入시킬 境遇도 있고 新國家의
獨立을 許容하는 때도 있다. 第一形式의 軍政에 있어서는 被占領國의 主權은 一時的制限을 받음에 不過하다. 第二
形式의 軍政에 있어서는 主權의 更迭을 招來하는 것으로서 戰勝國과 戰敗國과의 媾和條約과 占領國과 新生國家와의
協定 등으로써 規律되는 것이나(國家相續의 問題).

2 軍政法令 第二號는 美國이 軍政을 實施하기爲하여 一九四五年 八月九日現在 日本人名義의 모든 財産權을 一切凍

結하였고 同第三十三號는 右第二號에 依하여 凍結된 財産權의 所有權을 美軍政廳이 取得한 것을 宣言하였다. 如斯한 結果는 過去 意思主義를 原則으로 한 物權의 變動과 너무도 調節되지 않았음으로 軍政長官은 法令第百三號를 公布하여 「財産訴請委員會」로 하여금 前記 法令에 依하여 軍政廳에 所有權을 歸屬시킨 財産에 對하여 所有權의 歸屬을 確定하는 審判權을 附與하였으니 이는 一種의 「敵産裁判所」였다. 그러나 그 事務는 進捗되지 아니함으로 軍政長官은 一九四八年 四月十七日에 財産訴請委員會와 管財處에 對하여 「西紀一九四五年 八月 九日 以前에 賣買가 完了되어 日本人의 所有權이 消滅되고 따라서 訴請人의 所有가 되어 있었다는 書證이 明白한 事件은 訴請委員會에서 處理하지 않고 管財處에서 簡便한 節次로써 當該財産에 對한 軍政廳에의 所有權의 歸屬을 解除하고 訴請人에게 그 所有權을 返還하라」는 指令을 하였다. 이것이 世稱 「歸屬財産에 對한 訴請處理의 簡易節次」라는 軍政長官의 指令인 것이다 (以下 「簡易節次指令」이라 稱한다). 이리하여 訴請人은 財産訴請委員會의 裁決과 管財處의 決定의 二形式으로 訴請財産에 對한 所有權의 確認을 받았고 이 裁決과 決定에 따라 軍政廳 財産管理官은 最終의 一 「不動產所有權移讓書」를 訴請人에게 發給하였고 訴請人은 裁決書 또는 決定書에 不動產所有權移讓書를 添付하여 前所有名義者 日本人으로 부터 訴請人 앞으로 當該財産에 所有權移轉登記를 할 수 있었고 이로써 當該財産의 所有權의 歸屬이 確定되는 機構가 마련 되었던 것이다.

3 如斯한 財産이 「敵産」으로 規律되게 된 것은 軍政法令第二號 및 第三十三號에 依한 것이었다. 元來 敵産이라는 概念은 戰時國際公法上の 慣例에 依한 概念으로서 第一形式의 軍政에는 比較的 妥當하나 第二形式의 境遇에는 妥當한 概念은 아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如斯한 財産의 所有權을 어데로 歸屬시키느냐는 問題를 中心하여 「歸屬財産」이라 稱하게 된 것은 理由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歸屬財産處理法上の 「歸屬財産」이라 함은 同法第二條에서 有權의 解釋을 하고 있음과 같이 一層 制限된 概念으로 되었다. (同法第二條에 依하면 前述한 바와 같은 歸屬財産中 「美軍政廳이 訴請事件으로서 財産訴請委員會가 管財處에서 處理치 못한 채로 우리 韓國政府에 引繼된 것」만을 歸屬財産이라 稱한다 고 되어 있다)

(違憲提請理由) 原告側의 違憲提請의 理由의 要旨는 憲法第十五條에 依하면 「財産權은 保護된다」고 宣言하였고, 同第百條에 依하면 「現行法令은 憲法에 抵觸되지 아니하는 限 效力을 가진다」고 規定하였으니 (1) 前記 軍政法令에 依하여 所有權의 歸屬의 確認을 받은 本件 財産은 前記 憲法各條項에 따라 保護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憲法實施後 韓美間에 締結된 條約 「財政 및 財産에 關한 最初協定」에서도 「大韓民國政府는 在朝鮮美軍政廳法令第三十三號에 依하여 歸屬된 日本人 財産에 對하여 在朝鮮美軍政廳이 이미 行한 處分을 承認하고 認准한」(2) 하고 宣言하였음으로 如斯한 財産은 憲

法第七條에 의하여 國內法으로써 取得한 財産과 同一한 效力이 있음이 明白함에도 不拘하고 法務部長官에게 確定判決과 同一한 效力을 가진 確認處分을 할 수 있는 權限을 附與하여 原告의 所有權을 剝奪케 함을 內容으로 하는 法律 第二百十號는 (3) 前記憲法 各條項에 違反할 뿐만 아니라 同 第六十七條의 司法權을 또한 侵害하는 結果가 됨으로 그 違憲提請에 至하는 바라는 것이다.

1 過去適法한 行爲乃至 財産을 剝奪할 수 있는 唯一한 例外는 憲法 第一百一條에 依한 反民族行爲處罰法에 依하여서 만 可能한 것이었다.

2 同條約 第五條 第一項 本文引用、同條約 第五條 第二項乃至 第六項 參照。

3 法律 第二百十號는 禮紀 四二八三年 四月八日 公布된 全文 八條로 된 法律로서 「簡易節次에 依한 歸屬解除는 (一) 法務部長官의 再確認을 받지 않으면 그效力이 없고(第二條) (二) 法務部長官은 管財處歸屬解除決定을 不當하다고 認定하면 이를 却下한다(第三條) (三) 法務部長官의 確認에 關한 決定은 確定判決과 同一한 效力이 있다(第四條)」함을 內容으로 하는바 그外 第五條乃至 八條는 節次에 關한 條文이다.

〔憲法委員會判示要旨〕 憲法委員會는 이에 對하여 「審按하니」 法律 第二百十號 簡易訴請節次에 依한 歸屬解除決定의 確認에 關한 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느냐 아니 되느냐를 決定함에는 먼저 歸屬財産에 對한 訴請處理의 簡易節次에 關한 西紀 一九四八年 四月 十七日 美軍政長官指令의 性質을 明白히 하여야 하며 同指令의 性質을 明白히 하려면 美軍政法令 第三百號의 規定內容과 比照하여야 할 것이다. 同法令 第三百三號 第二條(가)(나)(다)項의 規定에 依하면 財産訴請委員會는 法令 第二號 同 第三百三號의 規定에 依하여 訴請財産에 對한 所有權의 歸屬을 確定하기 爲하여 그 財産에 關한 調査審理를 終了한 後 朝鮮軍政長官名義로 中間의 또는 終局的 裁決을 할 權限을 訴請委員會에 附與하고 이 裁決은 最終裁判所의 確定判決과 같은 既判力이 있음을 規定하였음에 反하여 歸屬財産訴請處理의 簡易節次에 關한 軍政長官指令의 各條項에 依하면 法令 第三百三號에 依하여 當然히 歸屬財産으로 決定한 것이 過誤이었다는 事實을 證明하는 證據가 있는 訴請事件에 限하여 이를 財産訴請委員會로 부터 管財處에 廻附하여 行政決定을 하게 할 것을 規定하고, 管財處는 財産訴請委員會로 부터 廻附을 받은 訴請事件을 受理하는 即時로 이를 審査하여 書證이 充分하다고 認證한 때에는 即時 그 訴請財産 및 果實을 敝産으로 부터 解除할 것을 規定하는 同時에 이러한 解除는 第三者로 부터 解除받은 訴請人에 對하여 그 財産에 關한 實質의 權利를 訴求하는데 何等 制限되지 아니함을 明白히 規定한 것이다. 以上 軍政法令 第三百三條의 規定과 軍政長官指令의 各條項을 比照考察하건대 前者는 訴請財産에 對한 實質的 權利의 存否를 確定하는 節次를 規定한 것이요 後者는

訴請財產이 軍政法令第三十三號에 의하여當然히 敵產으로 認定되는 狀態 既形式上 歸屬狀態를 解除하여 原狀에 回復케 함에 不過하고 同財產에 對한 實質的權利存否의 確定은 一般裁判上 訴求에 있음을 規定하였음에 一毫의 疑議할 마 없음으로 前記軍政長官指令에 依한 簡易節次에 依하여 歸屬解除된 訴請財產에 對하여는 아직 그 實質的權利가 訴請人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 明白함으로 第三者는 一般裁判所에 歸屬解除를 받은 訴請人을 相對로 該財產에 對한 實質的權利有無에 關하여 訴求할 수 있는 것이다. 同指令第三項의 「該財產을 敵產으로 부터 解除, 또는 그 解除를 當該機關에 命한」 이라는 所謂行政決定의 効果는 다만 該財產이 歸屬狀態로 부터 解除되며 歸屬以前의 狀態를 維持함에 不過한 것이요 何等實質的權利的 消長에 影響이 없는 것이라고 解釋함이 妥當할 것이다. 그리고 法律第百二十號簡易訴請節次에 依한 歸屬解除決定의 確定에 關한 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느냐 아니 되느냐를 考察컨대 同法第二條第一項에 依하여 法務部長官이 前示管財廳의 行政決定을 正當하다고 認定하더라도 그 効果는 敵產으로 認定되어 있는 財產이 敵產으로 부터 解除된 것일지 認定함에 不過한 것이요 何等實質的權利的 變動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또 同法第三條第一項에 依하여 前示管財廳의 行政決定이 不當하다고 該申請을 却下한 境遇에도 該申請의 目的物이 敵產으로 부터 解除되지 아니한 狀態로 復歸될 뿐임으로 그 訴請事件은 西紀一九四八年七月二十八日 軍政長官指令에 依하여 當然히 管轄法院에 繫屬되는 것이요 實質的權利的 變動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다음 同法第二條第二項에 依하여 確認申請期限이 經過된 境遇에도 前記申請却下の 境遇와 同一한 結果에 歸着된은 理論上 當然한 것이다.

그럼으로 同法에 依據한 行政決定의 確定如何에 不拘하고 利害關係人은 그 目的物에 對한 權利的 存否 確認 또는 給付의 訴訟을 法院에 提起할 수 있고 또 그 行政決定에 對하여도 行政訴訟을 提起할 수 있는 것이다.

法律第百二十號의 性質을 叙上の 理論으로 推考하건대 同法은 單純한 行政的措置로서 檀紀四二七八年(西紀一九四五年)八月九日 現在 日本人名義의 財產에 對하여 一應 歸屬財產에서 解除한 管財廳의 行政決定을 再審査할 것을 規定함에 不過함으로 同法의 規定이 憲法上 保障된 國民의 財產權을 侵害하거나 國內法과 同一한 効力이 있는 國際協定에 違反하거나 또는 司法權을 侵害한 것이라고 認定할 根據가 없음으로 이를 憲法에 違反한 法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或者가 文言의 形式에 拘碍하여 同法 第四條에 「前二條의 確定은 確定判決과 同一한 効力을 갖는다」 라는 規定을 指摘하여 憲法上 司法權을 侵害한 것이라고 論議할 지도 모르나 同法의 基本性質이 叙上の 理論과 같이 實質的權利的 存否를 確認하는 것이 아닌 以上 附隨의 文句의 形式的意義로써 法의 基本精神이 變更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判示하였다.

〔譯釋〕

一、法律第二百十號의 違憲與否의 先決問題로 「簡易節次」의 性質을 明白히 하여야 하며, 이를 爲하여 軍政法令第三百三號를 檢討하여야 한다는 態度에 對하여는 大體的으로 贊成할 수 있다. 그러나 問題는 「水山」의 體積을 測定할 때 하면 水面以下의 體積을 만드시 測量할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과 같이 法律과 法條의 解釋에는 法文을 通하여 그 法律의 規範으로서의 價値를 正確히 把握하기 爲하여 그 對象이 浮動하는 社會地盤을 歷史學的이고 社會學的인 面에서 考察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軍政法令의 性質을 究明하고자 하면 于先 普遍的인 國際公法上 容認되어 있는 占領의 性質 및 軍政의 性質을 考察하여야 할 것이었음에 不拘하고 委員會가 이點에 아무런 考慮도 아니하고 短刀直入的으로 二個法令을 比照함으로써 問題를 把握할 수 있는 것 같이 判示하는 그 態度는 아무리 最大限의 好意로서도 贊成할 수 없다. 換言하면 軍政法令의 性質을 究明하기 爲하여는 一般的인 問題로써 普遍的인 國際法上에 있어서의 占領軍司令官 및 軍政長官의 地位, 그리고 軍司令官과 軍政長官들에 依하여 發布되는 布告, 法令, 規則 및 指令等의 性質, 既存法秩序와 軍政法令과의 優劣關係乃至 軍政法令과 後日立法과의 關係等に 對한 原則問題에 基礎를 두고 그 위에 特殊性이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으로써 當該軍政法令의 性質에 對한 系統的이고 統一的이며 相互矛盾없는 妥當性 있는 體系的인 結論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委員會가 水山의 「露頭」의 一部分을 가지고 水山의 全體積을 把握하고자 함과 類似한 態度로서 本問題에 臨한데 對하여는 贊意를 表할 수 없다.

二、委員會가 簡易節次에 關한 軍政長官의 指令과 法令第三百三號를 比照한다는 態度에 對하여도 全的으로 贊同할 수 없다. 右兩者가 全然 그 系統을 달리하는 制度인은 同委員會가 判示하듯이 右指令은 歸屬解除에 關한 行政的措施을 規定한 것이요, 法令第三百三號는 歸屬解除에 關한 司法的措施에 關한 法令으로서 全

然 그法的性質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全然 그性質을 달리하는 行政指令과 司法法令과를 어떻게 어떠한 方法으로 比照한다는 것인가? 右指令은 訴請財産中 書證이 充分하여 八月九日以前에 日本人과 賣買가 完了되어 이미 日本人의 所有權이 消滅되었고, 따라서 그所有權을 軍政廳에 歸屬시킬이 不當하다는 事件은 이를 中央管財處에서 簡易한 行政措置로서 當該日本人名義의 財産이 軍政廳에의 所有權의 歸屬을 解除하고 八月九日以前에 當該財産의 所有權을 取得하였다고 主張하는 韓國人 其他 訴請人에게 當該財産을 返還할 것을 規定하였고, 法令 第三百三號는 訴請財産中 書證이 充分치 못하여 八月九日以前에 日本人으로 부터 買受하였다는 證據가 比較的 稀薄하다고 認定되는 事件에 對하여는 敵産裁判所인 財産訴請委員會가 審査하여 그 所有權의 歸屬을 明白히 決定하라는 것이었으니, 이 兩者는 모두 軍政廳財産管理官의 認准을 얻고 그가 發給하는 「不動產所有權移讓書」를 가지고 當該財産에 對한 所有權移轉登記節次를 밟게 되어 있던 것이다. 即 八月九日現在 名義는 日本人으로 있으나 그以前에 賣買가 完了되어 所有權이 日本人以外의 訴請人에게 移轉되어 있었다는 判定을 할 수 있는 權限을 中央管財處와 財産訴請委員會가 가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全然 性質을 달리하는 두가지의 制度이었다. 이와 같이 全然 性質을 달리하는 두 制度를 比照한다는 것은 類似한 同一部門에 屬하거나 同一類概念에 屬하는 事例에는 可能할 것이나 全然 他部門에 屬하거나 對等的部門에 屬하는 事例에 對하여는 比較研究는 不可能한 것이다. 所有權取得原因中에는 賣買 制度도 있고 贈與制度도 있는데 目的의 同一하다고 하여 이 두 制度를 比較研究한다는 意義가 果然 成立될 수 있는 것인가? 行政府의 構成과 司法府의 構成을 比較한다는 것은 어떠한 實價의 價値乃至 意義가 있는 것인가? 如斯한 論法은 別로 價値없는 일이다. 提請者의 眞意는 簡易節次에 依한 所有權取得은 即 行政措置에 因한 歸屬解除에 因한 所有權取得은 宜當 憲法으로 保障된 財産權이라고 主張함에 있었다. 故로

委員會로서는 여기에 答을 하면 足할 것이었다。單的으로 말하면 所有權取得原因이 하나는 行政的措施에 因한 것이요, 또 하나는 判決에 因한 것인데 前者는 憲法에서 保障할 必要가 없고 後者만을 保障하여야 한 다는 立論이 可能하느냐하는 것이었는데 同委員會는 最大의 好意로서도 理解할 수 없는 奇想天外의 論法으로써 이에 答하지 아니하고 말았다。

三、委員會가 法令 第三百三條의 裁決과 簡易節次의 決定과의 差異를 論及하는 態度乃至 結論에 對하여도 贊成할 수 없다。軍政法令 第三百三號와 前記指令의 全文을 一讀하면 法律에 깊은 素養이 없는 人士에게도 두 制度는 訴請財產(西紀 一九四五年 八月九日現在 日本人名義의 財產에 對하여 그 以前에 이미 賣買가 完了되어 實質的으로 日本人의 所有權이 消滅되고, 그 所有權은 訴請人에게 移轉되어 있다고 主張하고 있는 財產)에 對하여 그 所有權을 어데로 歸屬시키느냐? 換言하면 當該財產에 對하여 八月九日以前에 賣買가 完了되었다는 事實을 認定하고 訴請人에게 그 所有權을 歸屬시키느냐? 不然이면 그 賣買의 完了主張事實을 否認하고 法令 第二號、第三十三號에 依하여 軍政廳에 그 所有權을 歸屬시키느냐하는 實質的 所有權歸屬問題를 決定하기 爲한 것으로서 하나는 敵產裁判所인 訴請委員會에서 裁判의 形式에 依하고, 다른 하나는 管財處에서 行政的措施의 形式에 依하여 이를 決定할 것을 規定한 制度임은 屢屢論及한 바와 같이 一毫의 疑問의 餘地가 없음에도 不拘하고 委員會가 法令全體의 根本的精神과 法文의 有機的關聯을 無視하고 法文의 嚴然한 表現을 無視하면서 前者는 實質的인 所有權을 確定함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나 後者는 形式的인 歸屬狀態의 解除를 決定하는 것이니 前者에서는 所有權이 確立되나 後者에서는 權利歸屬以前的 狀態로 復歸함에 不過하다 判示하고 前者에서는 實質的權利가 確定됨으로 第三者가 訴請人을 相對로 當該財產에 對하여 訴求할 수 없으나 後者에 있어서는 그것이 可能하다고 判示하나 이러한 論法은 누구에게도 納得될 수 없음은

自명한 바이므로 이以上論及을 아니한다.

四、委員會가 法律第二百十號의 違憲與否를 判示하고 群盲評象의 論法에는 驚倒하지 않을 수 없다. 即 法務部長官이 法律第二百十號 第二條第一項에 依하여 管財處決定을 正當한 것이었다고 그대로 確認을 할 때 에는 弊害가 없다는 趣旨의 判示에는 別異議가 없다. 그러나 同法第三條第一項에 依하여 中央管財處의 決定이 不當하였다고 認定한 때 確認申請을 却下하는 權限이 附與되어 있으며 法務部長官의 申請却下라는 「否定의 確認」은 同第四條에 依하여 確定判決과 같은 效力이 附與되어 있을 뿐 아니라 却下確認은 同法第六條 第二項에 依하여 自動的으로 中央管財處決定에 因한 所有權取得登記까지 抹消시키는 怪力을 保有하게 되어 있다. 委員會는 이러한 結果에 對하여 法文을 無視하고 怪理論으로서 訴訟의 門이 열렸으니 財產侵害가 아니된다고 判示하고 있으나 訴訟의 길이 있기만 하면 他人의 財產權登記를 恣意로 抹消하고 自己앞으로 歸屬시켜 놓아도 財產權의 侵害가 아니된다는 理論은 이世上에 通用될 수 없을 뿐 아니라, 如斯한 怪力을 가진 法律第二百十號가 委員會가 判示하든지 「單純한 行政措置를 規定한 法律」에 不過할 수도 없으며 他人의 所有權登記까지 抹消하여 버리는 「否定的 確認」은 裁判에 依하지 아니하고 他人의 權利를 剝奪하는 結果가 되어 同法이 司法權을 侵害한다는 非難을 免할 道理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同判示가 同法第四條의 「確定判決」이라는 法文은 附隨的 形式的 文句에 不過하다고 嚴然한 法文의 表現까지 抹殺하고 一顧조차 아니하는 態度는 法文은 너네까지나 解釋의 中心이 되어야 한다는 原則을 犯하고 있는 것이다(1)(2).

1 憲法委員會가 如斯한 決定을 한後 全國各地에 걸친 八〇四件의 中央管財處決定財產은 거의 全部가 國家로 歸屬되 고 이들을 圍繞한 利權爭奪은 가진 醜態와 悲劇을 造成하였다.

2 法文의 解釋은 그 法文을 中心으로 하여 當該法律全條文의 意味와 의 關係를 考察하고 當該法律과 其他法律과의 全體的 聯關性도 또한 考察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法律의 全體系中의 位置가 規律되고 當該法條가 가지는 規範으로

서의 意義가 全體와의 關聯에서 明白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忘却되어서 아니 되는 것은 法文의 表現 그 自體나 法文의 表現을 無視하지 아니하고 그 合理的 意義를 發見하는 精神的 活動이 곧 解釋이다.

閱 雲 植

〈筆者——辯護士〉

〔四〕 콜푸 海峽 事件 (國際判例)

【事實】 콜푸 海峽 事件 (The Corfu Channel Case)의 當事國은 英國과 알바니아國이다. 事件은 一九四六年 五月十五日 英國 所屬의 두 巡洋艦이 北部 콜푸 海峽을 通航하던 中 Saranda附近의 알바니아國 沿岸砲臺로부터 砲擊을 當한데서 發端한다. 一九四六年 五月二十九日付 英國 海軍司令官의 報告에 依하면 同砲擊은 上記 두 艦船이 알바니아國 沿岸砲臺를 通過하여 方向을 옮기고 있을 무렵에 始作되어 十二分間 繼續되었는데 그間約 十二乃至 二〇發의 砲彈이 發射되었으나 命 中은 없었으며 砲擊은 두 艦船이 射程距離를 벗어났을 때에 비로소 停止되었다. 五月二十一日付 알바니아國의 覺書는 「國際法上 確立된 一般의 秩序에 따라서」(in accordance with a General Order founded on international law) 同 英國 艦船을 向하여 數發을 發砲하도록 命令한 것이라고 하였다. 英國 政府는 即刻 알바니아國 政府에 對하여 嚴重한 抗議를 提出하고 아울러 이미 作定되어 있었던 兩國 政府間의 正常의 外交關係의 設定에 合意하는 通牒의 交付를 保留하게 되었다. 同 抗議에 있어서의 英國의 主張은, 國際法上 軍艦은 海峽, 特別히 公海間을 連結하며 또한 慣行上 國際航行에 使用되고 있는 콜푸 水路와 같은 海峽에 있어서의 이른바 無害通航權(the right of innocent passage)을 享有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英國 政府의 抗議에 對해서 알바니아 政府는 同事件이 發生한데 對하여 遺憾의 뜻을 表明하면서 萬若 그 두 艦船이 英國 所屬의 것이었음을 認知할 수 있었다라면 砲擊을 加하지 아니 하였을 것이나 그러나 同 艦船은 所屬國旗를 揭揚하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아울러 外國의 軍艦 및 商船은 알바니아 政府 當局에의 事前 通告와 同當局의 許可없이 는 알바니아國 領水를 通航하는 權利를 갖지 않는다고 宣言하였다. 알바니아國 政府의 이러한 宣言은 其後 同國 參謀總長의 通告로써 實施되게 되었는데 이措置는 알바니아國 領水에 있어서의 外國 軍艦 및 商船의 通航에 關하여 同國 政府